대구신문

2006년 09월 25일 003면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철퇴

칠곡군수 등 5명, 형 확정땐 당선무효

법원이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대응하고 있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0명인데, 이 중 절반인 5명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설, 추석명절 때 관내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강황 대구시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 의원은 대구고법에 항소를 했으나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또 청도군 군의원과 영천시 시의원 각각 1명과 대구 수성구 구의원 1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기초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선고결과가 확정되면 이들은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직을 잃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명성을 크게 해친다."면서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공명선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